



'21. 8. 24.(화) 11:00

이 장 회 의

회 의 자 료

상 촌 면

총 무

1 인구 5만 지키기 운동 협조

[담당자:이익선]

2021. 1. 1. 기준	2021. 7. 31. 기준	증 감
2,388명 (남 : 1,163 / 여 : 1,225)	2,346명 (남 : 1,153 / 여 : 1,193)	△42

2 [재]영동군민장학회 장학생 선발 홍보

[담당자:이익선]

- 신청기간 : 2021. 9. 8.(수)까지
- 신청자격 : 신청일로부터 **이전 6개월이상** 계속 영동군에 거주하고 있는 군민 또는 그 자녀(조손가정 포함)
- 선발인원 : 304명(대학생 152, 고등학생 102, 초·중학생 50)
- 선발부문(대학생) : 성적우수장학금, 난계국악장학금
- 신청방법 : 본인 또는 부모가 **직접 방문 신청**(우편접수 불가)
 - 대 학 생 : 면사무소
 - 초·중·고등학생(관내) : 재학 중인 학교
 - 관외 고등학생 : 레인보우영동도서관 1층 접수대
- ※ 대학생 신청 관련 문의는 면사무소 총무팀(☎ 740-5802)
초·중·고 학생은 재학 중인 학교 및 군청(740-3772)으로 문의

3 코로나 확산에 따른 타지역방문 등 자제 홍보 [담당자:이익선]

- 코로나 확산지역(수도권, 청주, 충주 등)의 사적 방문자제
- 타 시도·시군 행사, 집회, 시위 참여 자제
- 지역 내 친인척·지인간 일상적인 초청이나 참석 자제
- 여러 시군의 지인들이 모이는 약속이나 모임은 취소 또는 연기
- 협조사항 : 마을방송 홍보(방송문 : 붙임 2)

주민복지

1 제5기 지역주민욕구조사 실시 알림

[담당자:김희경]

- 조사기간 : 2021. 9. 1.(수) ~ 9. 10.(금)
- 대 상 : 무작위 추출에 의한 조사
- 조사방법 : 1대1 가구 방문 면접조사
- 기준시점 : 2021년 7월말 기준
- 조사내용 : 가구일반현황, 사회보장관련욕구, 생활여건 및 지역사회인식 등
- 협조사항 : 지역주민욕구조사 실시 홍보 및 이장 연락처 조사원 제공 협조

2 긴급복지지원제도 홍보

[담당자:김희경]

- 대 상 : 위기사유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
- 내 용 : 저소득 위기가구 증가 예상으로 적용 재산 및 금융재산 기준 완화
- 신청기간 : 9월 말까지 연장
- 신청방법 : 면사무소 방문 신청

산 업

1 2021년 논 토양 벧짚환원 선도농가 육성사업 수요조사 [담당자:이준우]

- 기 간 : ~ 8. 25.(수)
- 대 상 : 0.1ha 이상 벼재배 농가 중 벧짚환원을 완료한 농가
- 지원기준 : 500천원/ha
- 유의사항 : 2022년 벧짚환원 조사와 다르기 때문에 재신청 필요

2 영동군 푸드플랜 구축 관련 설문조사

[담당자:이준우]

- 기 간 : 2021 8. 23(월) ~ 8. 27.(금)
- 대 상 : 30명
- 내 용 : 먹거리 인식 및 영동군 농산물 관련 소비 조사

3 산림과 비료지원사업 마감

[담당자:이준우]

- 기 한 : 2021 8. 27.(금)까지
- 유의사항 : 사업완료서 미제출시 보조금지원 불가 및 3년간 사업대상 제외

4 레인보우영동페이 카드 발급 홍보

[담당자:김진호]

- 기 한 : 2021. 8월말까지
- 대 상 : 관내 주민
- 발급방법 : 스마트폰 앱(지역상품권chak), 농협 또는 우체국 방문 신청
 - 스마트폰 이용 가능자는 지역상품권 어플을 깔아 되도록 온라인 신청
 - 방문 신청자는 신분증, 휴대폰 지참하여 농협, 우체국 방문 신청
- 내 용 : 국민지원금 레인보우영동페이 우선 지급에 따른 영동 사랑상품권 카드 발급
- 협조사항 : 방문 신청 시 1인당 30분 가량 소요되니 스마트폰 이용 가능자는 온라인 신청 독려

행 사 일 정

월일	시간	행 사 명	장 소	비고
9. 1.(수)		농업기계 현장순회 교육	유곡2리	

[붙임1] 마을별 인구 증감 현황

	담당직원		21. 1. 1. 기준	21. 7. 31. 기준	증감	비고
	직 급	성 명				
21개리			2,388	2,346	-42	
임산1리	행정6급	여준석	195	175	-20	
임산2리	행정7급	이익선	258	250	-8	
관기리	행정8급	연지환	114	104	-10	
돈대리	시설9급	정민봉	149	150	1	
교동리	시설9급	정민봉	97	101	4	
하도대리	사회복지 7급	김희경	153	150	-3	
상도대리	사회복지 7급	김희경	138	140	2	
하고자리	운전9급	정석환	82	83	1	
상고자리	운전9급	정석환	49	51	2	
둔전리	행정7급	연지환	70	66	-4	
물한1리	행정9급	이준우	112	108	-4	
물한2리	행정9급	이준우	122	123	1	
대해리	행정9급	공정현	135	143	8	
석현리	행정9급	공정현	55	55	0	
홍덕리	행정6급	여준석	111	110	-1	
궁촌1리	의료기술6급	정영애	128	124	-4	
궁촌2리	의료기술6급	정영애	35	33	-2	
하궁촌리	행정9급	최광묵	67	66	-1	
유곡1리	농업7급	김진호	74	66	-8	
유곡2리	농업7급	김진호	141	142	1	
고기리	행정9급	최광묵	103	106	3	

[붙임2]

마을 방송 문안

주민 여러분께서는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하여** 수도권, 도내 청주·충주 등 확산지역의 친인척·지인간의 일상적 초청이나 교류, 소모임·동호회, 스포츠·공연 등 각종 문화행사 **참석 및 방문 교류를 자제**해주시기 바라며, 여러 시군의 지인들이 모이는 **약속이나 모임은 취소 또는 연기**를 부탁드립니다.

마을 방송 문안

알려드립니다.

9월 1일부터 10일간 영동군과 지역사회보장
협의체에서 지역주민 욕구조사를 실시합니다.

본 조사는 2022년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조사입니다.

조사원은 방역수칙을 준수하고, 명찰을 패용
하여 각 세대를 방문하고 있으니,

갑작스럽게 방문하더라도 널리 이해해주시기
바라며, 조사원이 방문한 세대에서는 조사에
적극 응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은 영동군에서 알려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긴급복지지원제도는

생계곤란 등의 위기상황에 처하여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신속하게 단기적으로
지원하여 위기상황 해소를 도모하는 제도



긴급복지 지원제도



신청은 어디에 하나요?

신청방법

- 거주지 관할 시·군·구 또는 읍·면·동
-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없이 129, 24시간 긴급지원 상담 사군구로 연계)
- 제출서류 : 금융정보제공동의서(필수)
기타 증빙자료(위기사유·소득·재산 등 확인 필요시)

지원받은 금액을 반환해야 할 수도 있나요?

지원중단 및 비용환수

- 거짓 그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 지원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
- 지원 적정성 심사결과 긴급지원이 적정하지 아니한 경우 지원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
- 지원기준을 초과하여 지원을 받은 경우 그 초과 지원 상당분
- 반환명령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

긴급복지지원제도로

우리 함께 이겨내요!

당신을 응원합니다!



누가 긴급지원대상이 되나요?

- ① 위기사유 발생으로 ② 생계유지가 곤란한 ③ 저소득층

소득·재산 기준 (2021년)

소득	365.7만 원 이하(월, 4인기준)	
재산	대도시	18,800만 원 이하
	중소도시	11,800만 원 이하
	농어촌	10,100만 원 이하
금융재산	500만 원 이하(단, 주거지원의 경우 700만 원 이하)	

- 갑작스런 「위기사유」로 생계유지 등이 곤란한 경우

● '위기사유'란?

1.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급시설에 수용 등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2.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3.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4. 가정폭력 또는 성폭력을 당한 경우
5.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6.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 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영입이 곤란하게 된 경우
7.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8.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지자체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 소득활동 미미(가구원 간호·간병·양육), 기초수급 중지·미결정, 수도·가스 중단, 사회보험료·주택임차료 체납 등
9. 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 ① 주소득자와의 이혼
 - ② 단전된 때
 - ③ 교정시설 출소자 생계 곤란
 - ④ 가족으로부터 방임·유기 또는 생계곤란 등으로 노숙을 하는 경우
 - ⑤ 사각지대발굴, 통합사례관리 대상자 또는 자살고위험군으로서 관련 부서(기관)로부터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을 받은 경우
 - ⑥ 코로나19로 인한 무급휴직 등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⑦ 코로나19로 인한 자영업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또는 프리랜서의 소득이 급격히 감소한 경우

※ 그 밖에도 각 지자체에서 조례로 위기사유를 추가로 정하고 있으므로, 개별 지자체에 문의해주세요.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지원종류별 지원수준 (2021년)

지원종류	지원내용			
생계지원	(원/월)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474,600	802,000	1,035,000	1,266,900
주급여	의료지원	연 3,000,000원 이내		
	주거지원	대도시	643,200원 이내(월, 4인기준)	
		중소도시 농어촌	422,900원 이내(월, 4인기준) 243,200원 이내(월, 4인기준)	
사회복지 시설이용	1,450,500원(월, 4인기준)			
부가급여	교육지원	초	221,600원 이내/분기	
		중	352,700원 이내/분기	
		고	432,200원 이내/분기 및 수업료·입학금	
	그 밖의 지원	연료비	98,000원(월, 동절기 10~3월)	
해산비		700,000원(인)		
	장제비	800,000원(인)		
	전기요금	500,000원(최대)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한시적 제도개선

(2021년 9월 30일까지)

재산 기준

→ 대도시 3억 5천만 원, 중소도시 2억 원, 농어촌 1억 7천만 원 이하
* 재산 차감 기준 반영 시

금융재산 기준

→ 1인가구 774만 원, 4인가구 1,231만 원 이하
* 생활준비금 공제비율 확대(65%→150% 반영 시)

지원횟수 제한 완화

→ 동일사유 또는 동일 상병 2년 이내에도 재지원 가능(단, 지급종료 후 6개월 이내에는 재지원 불가)